

# 더샵 아르테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2.03 ]

입주자격 및 청약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https://더샵아르테.com) 및 해당 공고문 전문 (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더샵 아르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이버건부주택(https://더샵아르테.com) 운영과 방문관림으로 병행운영 할 예정입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s://더샵아르테.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사가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견본주택 방문 시 코로나-19(COVID-19)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주체,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주안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포스코건설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48, 3층 (주안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죽도동)
법인등록번호	120171-0005989	174611-0002979

## I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부모양자)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일정	2023.02.13.(월)	2023.02.14.(화)	2023.02.15.(수)	2023.02.21.(화)	2023.02.24(금)-2023.02.26(일) 3월간(1000-1630까지)	2023.03.06(월)-2023.03.08(수) 3월간(1000-1630까지)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10:00~ 14:00)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더샵 아르테 견본주택 방문 (10:00~16:3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별 없음,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43 · 문의전화 : 1660-1146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음.
-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은행창구 접수불가)가 가능함 (견본주택 방문 접수시간: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 (상구 접수시간: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합동 등 청약자격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자격이 적격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II 공급내역 및 공급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 제1157호(2023.02.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12 - 29층 10개동, 총 770세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7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52세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74세대, 노부부모양자 특별공급 2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총 1,410대 (아파트 1,398대, 근린생활시설 12대)
- 대지면적 : 36,985.3000㎡
- 입주 시기 : 2024년 06월 예정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 표기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합계	최하 층 배 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 용면적 (지하주차 차장 등)		특별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일반 (기관 추천)	다자 녀가 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 부모 양자	계			일반 공급		
민영주택	2023000015	039.9892	39	39.9892	20.1313	60.1205	30.5636	90.6841	22.2270	6	-	15	9	1	31	29	60	3	
		059.8540A	59A	59.8540	20.8976	80.7516	45.7463	126.4979	29.8544	27	29	53	26	8	143	129	272	15	
		059.9389B	59B	59.9389	21.3363	81.2752	45.8112	127.0864	30.0480	2	2	5	2	-	11	14	25	1	
		059.9851C	59C	59.9851	21.3638	81.3489	45.8465	127.1954	30.0752	16	18	32	15	5	86	82	168	7	
		074.7202	74	74.7202	22.8984	97.6186	57.1085	154.7271	36.0903	15	17	30	14	4	80	77	157	8	
		084.9135A	84A	84.9135	24.8184	109.7319	64.8992	174.6311	40.5686	4	4	8	4	1	21	21	42	4	
		084.9013B	84B	84.9013	25.1726	110.0739	64.8899	174.9638	40.6951	4	4	9	4	1	22	24	46	3	
		합계									74	74	152	74	20	394	376	770	41

## IV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약식)	공급세대수	분양가(원)					
		최저가			최고가		
39	60	284,100,000			298,900,000		
59A	272	413,800,000			437,900,000		
59B	25	407,300,000			431,600,000		
59C	168	382,900,000			419,400,000		
74	157	485,200,000			514,300,000		
84A	42	561,500,000			594,300,000		
84B	46	567,300,000			594,300,000		

※ 동별, 층별, 호별 분양가가 상이하오니, 당사 홈페이지 (https://더샵아르테.com)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30%)	
	1차(1천만원)	2차(잔금)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3.05.31	2023.08.31	2023.10.30	2023.12.29	2024.02.28	2024.04.30	입주자정일

## □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구분	금용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획	우리은행	1005 - 904 - 451926	주안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상가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입금 [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생영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음을 계약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 계약금 입금 후 부작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 [우리은행 1005-904-451926, 예금주: 주안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금하여야 하며, 발코니화장금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납부계획과 다르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 상가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가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입입에 따라 계약미체결, 연체로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V 청약자격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공급세대수

구분	39	59A	59B	59C	74	84A	84B	계	
									국기유공자 등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기유공자 등	1	6	1	5	3	1	1	18
	장기복무제대군인	1	5	1	2	3	1	1	14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4	-	2	2	1	1	11
	북한이탈주민	-	2	-	1	1	-	-	4
	납북피해자	-	1	-	-	1	-	-	2
	우수선수수능인	-	1	-	-	1	-	-	2
	중소기업근로자	2	5	-	3	2	1	-	13
	인천광역시	1	1	-	1	1	-	-	5
	서울특별시	-	1	-	1	1	-	-	3
	경기도	-	1	-	1	-	-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15	1	9	9	2	2	38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50%	-	14	1	9	8	2	2	36
	신혼부부 특별공급	15	53	5	32	30	8	9	15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9	26	2	15	14	4	4	74	
	노부부모양자 특별공급	1	8	-	5	4	1	1	20
<b>특별공급합계</b>	<b>31</b>	<b>143</b>	<b>11</b>	<b>86</b>	<b>80</b>	<b>21</b>	<b>22</b>	<b>394</b>	

### □ 특별공급신청자격

구분	내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노부부모양자 등)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 원칙으로 함.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능 (은행창구 접수불가)</li> <li>인터넷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 및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청약 접수일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가능하며 관련 증명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함.</li> </ul>
1회 한정/지적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에 선정될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중복신청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소형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부모양자 특별공급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 이상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중복신청 하여 1명 이라도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당첨자는 무주택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작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1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제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주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사건청약을 포함)제한]</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li> <li>- 무주택세대주 요건 : 노부부모양자 특별공급</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청약자격 청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기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④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잔액이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ul>

청약 자격 청약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부부모양자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신청자</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 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④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잔액이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	--

###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03(금)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양육)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의 지역에 거주하여도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2순위)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li> <li>※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기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등록표초상번호 불일치 사실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작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한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제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주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신청자격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입주자(민간)사건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작격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주택에 관계없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기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입주자 저축 관련 기조사항</li> </ul>

입주자저축 종류	기한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입주자모집공고 당일 까지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청약저축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으로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청약부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 85㎡초과 주택에 청약 시 청약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 까지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예치기준금액 납입

-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단, 청약예금으로 전환 이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 ※ 청약부금 → 청약예금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신청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변경 없이 청약신청 가능)
- ※ 청약예금 신청하는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발표(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기준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①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②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③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작격당첨자에 해당되며, 관련 증명서류를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④ 청약신청 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작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⑤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당첨자는 청약 시 기입한 정보의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견본주택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인천광역시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기타지역)	1순위 (해당/기타)	전 주택형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li>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액을 납입하여 납입잔액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잔액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기전에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li> </ul>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2]

청약가능 전용면적	거주 지역별 예치금액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VI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제01282023 - 101 - 0000200호	242,017,44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VII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지엔이엔씨
감리금액(원)	2,702,133,000	514,509,000		53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602 - 81 - 08127	105 - 86 - 72502		108 - 81 - 79867